

아닐 수 없다. 사이버 스페이스상의 공개토론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위험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정당당한 싸움을 하기 힘들다. 공개토론이기 때문에 다룰 수 없는 주제가 있을 수 있으며, 사실의 반박력보다는 토론참여자들을 자기편으로 만드는 설득력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한충련에 관한 토론실을 분석한 윤영철(1998)은 가상공간에서의 공개토론이 하버마스의 공론권 개념을 구현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즉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상대방에 대해서 신뢰나 존경을 표하는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며 대립적인 의견들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그 차이를 좁히거나 타협점을 모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가상공간에서는 하버마스가 의도하는 ‘합의된 여론’이 도출되기보다는 정치적, 이념적 대립과 경쟁이 반복적으로 지속되면서 의견들간의 ‘차이’만이 뚜렷하게 부각되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가상공간에서의 토론 공동체는 합의지향적이 아니라 분열지향적이라는 것이다. 가상공간 토론에서는 상대방을 설득하기 매우 어렵다. 참여자들의 신분위장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각종 자료와 정보를 활용하더라도 상대방을 설득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런 위험부담 때문에 토론장에서의 공개적 대결을 택하기도 힘들며 그렇다고 해서 승산이 크지 않은 법적 소송을 통한 피해보상도 모색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인터넷 저널리즘의 문제에 대해 시민사회가 나서야 한다. 우선 사이버 스페이스에 진정한 토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교육과 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자유로운 사상의 시장이나 공론장에 대한 희망은 가질 수 없다. 또한 지금과 같은 토론문화에서는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공정하게 반론권이 행사될 수 없으므로 합리적인 사후 피해구제 방안이 나오도록 시민사회가 문제를 제기하여야 한다.

III. 디지털 방송과 정보복지

방송의 디지털화는 기존의 방송 기술과 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매체·다채널화를 실현하고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90년대 초반 지상파 5개에 불과하던 TV 방송 채널이 99년 말 현재 전국 및 지역 단위의 지상파 13개, 케이블 30개, 위성 4개 등 50여 개 채널로 늘어났으며 수 많은 인터넷 방송이 나타났다.¹²⁾ 현재 진행 중인 방송매체의 디지털화는 머지않아 지상

12) 인터넷 방송은 지상파 텔레비전이나 케이블 텔레비전이 다루지 않는 틈새내용을 다루고 있고 수용자가 제작에 참여하는 쌍방향성,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언제든지 볼 수 있다는 융통성 때문에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의 자료에 의하면 1997년 시작된 인터넷 방송은 현재 방송국이 360여 개, 채널 수는 5,000여 개에 이른다. 기존의 언론사가 운영하는 것, 독립 법인이 운영하는 것, 그리고 “나홀로” 방송 등 세 가지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전문가들의 예측에 따르면, 5년 후에는 현재의 3배인 1,000개에 이를 것이며 틈새시장을 파고드는 현재의 전략에서 벗어나 자체적으로 경쟁력 있는 뉴미디어로 발전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통합방송법에 따르면 인터넷 방송은 유사방송으로 분류되어 방송위원회의 감독과 사후 심의를 받게 돼 있다.

파 30~40개, 케이블 70~80개, 위성 50~80개 등 150~200개의 TV채널을 가능하게 할 전망이다.

신문사와 마찬가지로 방송사들도 현재와 같은 프로그램의 기획, 제작, 송출 외에 그와 관련된 각종 정보 DB를 구축하고 종합영상정보산업으로 발전하여 종합정보서비스업에 나서게 될 것이다. 결국 신문이나 방송 또는 통신이 기존의 사업 영역을 서로 넘나들면서 정보를 생산하고 이를 공급할 수 있는 산업적 기반을 구축하게 되어 언론의 거대 기업화를 촉진하게 될 것이다.

기술중심적 관점에서 보면 디지털 혁명은 수용자에게 거의 무한정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 같다. 물론 다매체, 다채널, 상호작용적, 탈제도적 미디어 상황은 수용자에게 선택과 참여의 폭을 넓혀주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정보민주주의론자들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정보소비자”는 여전히 주어진 정보와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소비자에 불과할 뿐이며, 소비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오히려 정보의 불평등한 소비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비용지불 능력의 차이 때문에 새로운 서비스의 혜택이 경제적, 문화적 기득권 집단에게 편중되게 된다는 것이다.¹³⁾

정보민주주의론자들은 시민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공영역을 확보하는 정보복지가 확립되어야 정보 민주주의가 제도화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그 기반으로서 보편적 서비스의 강화를 주장한다. 보편적 서비스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소외계층에 대해 사회구성원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정보접근 기회를 마련해 줌으로써 그 사회의 미디어가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와 편익이 기득권층에 편중됨을 방지하여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활용되어 왔다. 이러한 조치는 정보의 유료화로 인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우려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더욱 더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디지털화로 인해 방송사업자들이 얻는 경제적 이익을 공중을 위해서 환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미국의 백악관 자문기구인 “디지털 방송사업자의 공익의무에 관한 자문위원회”의 권고는 귀담아 들을만 하다. 디지털 위원회가 강조한 세 가지 원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방송사뿐만 아니라 공중 또한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이익을 얻어야 한다는 것, 둘째는 새로운 경제적, 기술적 발전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책의 유연성이 중요하다는 것, 셋째는 어느 경우에도 규제보다는 정보공개, 자율적 규제, 경제적 동기 부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디지털 방송사업자의 공익 유지 방안으로 위원회는 방송사업자의 자발적인 공익활동 공개, 자율적 행동 지침 마련, 공동체 사회의 요구에 부응, 공중에 대한 책임완수, 공공서비스 공지, 공공 프로그램의 제공 의무, 자막 방송 등을 포함한 공익 유지를 위한 최소한 요구, 디지털 방송을 통한 교육의 향상, 다중방송과 공익, 정치담론의 수준향상, 재난경고 기능의 강화, 디지털 프로그램에 대한 장애인 접근

하지만 심의규정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 (한국일보, 6월 2일자)

13) 1995년 11월에 개최된 제2회 서울 YMCA 시청자 시민운동을 위한 전국 지도자 워크숍에서 발표된 “공공영역의 민주화와 참여민주주의” 참조(발표자:강명구).

권 보장, 방송 프로그램의 다양성 유지, 새로운 텔레비전 환경에서 공익의무에 관한 새로운 접근 등을 권하고 했다.¹⁴⁾

이와 같은 선진국의 연구들은 디지털 환경하에서 방송의 공공성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특히 수용자들이 공익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밝히고 있다. 미국의회는 정보고속도로 정책 입안과정에서 공공의 이해와 소비자 주권 보호문제를 주제로 시민운동단체, 소비자 단체들의 의견을 공식적인 청문회를 통해 들었다고 한다. 바로 이러한 활동이 앞으로 수용자 단체들이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 활동인 것이다.

IV. 통합방송법과 시청자권리

시청자 주권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법리적인 근거에 따라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시청자 주권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대체로 이 권리는 방송의 공공성 개념에 근거한다는 데 일치된 의견을 보인다.

기존의 학설들은 방송과 시청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계약관계의 부재와 시청자가 불특정 다수라는 점때문에 시청자의 법적 지위를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시청자의 권리는 전파공유의 이념과 공공신탁론을 통하여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김종서, 1999). 즉 시청자의 공유재산인 전파의 독점적 사용권은 궁극적으로 국민(시청자)의 위임을 받은 국가권력의 허가를 받아서만 부여된다는 점에서 시청자는 방송의 존립 근거이자 그 실현대상이라는 것이며, 그러한 관계는 국가권력과 국민과의 관계와 흡사하다는 것이다. 시청자를 전파소유자로 보면 시청자 주권주의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새로운 방송법과 그 시행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시청자 권리 및 참여 보장을 위한 구체적이고 명시적 조항들이 포함되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¹⁵⁾ 이는 국가가 시민사회의 요구를 인정한 것으로 1990년대 활발하게 전개된 시청자 주권운동의 결과라고 평가된다. 개정 전 방송법에도 시청자 위원회 등 시청자 관련 조항이 있었지만 구체적 조항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었다. 더욱이 시청자 액세스 관련 규정은 아예 없었고 미디어 교육이나 시청자의 반론권에 대한 보장도 미흡했다.

통합방송법은 시청자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였다. 시청자위원회의 방송편성에 대한 의견제시와 시정요구 등 시청자위원회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시청자 참여의 구체적 방안으로서 이 법은 액세스 프로그램의 편성을 의무화하고 시청자

14) Advisory Committee on Public Interest Obligations of Digital Television Broadcasters, "Charting the Digital Broadcasting Future," Final Report, December 18, 1998, Washington D.C. 참조. 대통령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로 부통령에게 제출하여 일명 고어 보고서라 부름.

15) 새로운 방송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청자 권리 보장을 위한 조항들이 명문화되었다. 사업자 재허가와 시청자 위원회 평가의 연계(제17조 3항), KBS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 편성의무화(제69조 6항), 뉴미디어 방송에 액세스 프로그램 편성의무화(제70조 7항), 시청자위원회 권한 강화(제88조),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의무화(제89조) 등이 그것이다.